

## 大田直轄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案中改正條例案

議案番號 369

提出年月日 : '93.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基金의 造成 및 運營,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大田直轄市 青少年 自立支援基金管理委員會에서 審議도록 規定되었으나 各種 委員會 整備計劃에 따라 大田直轄市 市政 調整委員會에서 審議도록하고, 基金의 支給對象範圍를 擴大하여 家庭環境이 어려운 青少年들이 고루혜택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與件變化에 따른 字句修正等 運營에 圓滑을 기하기 위함.

### 2. 主要骨子

- 가. 基金造成 財源中 青少年對策委員 또는 篤志家 誠金品으로 하였던 것을 篤志家가 出捐하는 現金, 物品 其他財產으로 하고자 함. (案 第2條)
- 나. 大田直轄市 青少年 自立支援 基金管理 委員會에서 運營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審議도록 규정된 것을 大田直轄市 市政調整委員會에서 審議도록하고 不必要한 委員會 構成條項을 削除하고자 함. (案 第3條 및 第4條)
- 다.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위원장이 任命하였던 것을 條例로 指定하고자 함. (案 第7條)
- 라. 自立定着支援金을 農魚村, 營·魚農 青少年으로 하였던 것을 農村, 營農青少年으로 하고자 함. (案 第8條)
- 마. 兒童福祉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成長 退所 兒童中 自立하기 어려운 青少年도 惠澤을 받도록 基金支給對象을 擴大하고자 함(案 第8條)
- 바. 區 青少年 育成地方委員會 議決을 거쳐 推薦하였던 것을 區政調整委員會 議決을 거쳐 추천도록 하고자 함 (案 第9條)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독지가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재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직할시 시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국장이,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년계장이 된다.

제8조 제1항 제3호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영·어농”을 “영농”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정착 지원금 :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성장 퇴소 아동 중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

제9조 제1항 중 “구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청소년 대책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제2조(기금조성) ..... ..... 1. .... 2. 독지가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재산 3. .... .....
제3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금관리 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직할시 시장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과장이 된다	(삭 제)
제6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 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7조(기금관리) ①~③ (생략)	제7조(기금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④ 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8조(기금지급 대상등) ① (생략) 1~2. (생략) 3. 자립정책지원금 :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어농사업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어촌 청소년</p> <p>(신 설)</p>	<p>④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은 가정복지국장이, 기금출납공무원 은 청소년계장이 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금지급 대상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자립정책지원 :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 하고 영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청소년</p> <p>4. 생활정책지원금 :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성장퇴소 아동중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p>
<p>제9조(대상자 추천및 선발) ① 대상자는 구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구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p>	<p>제9조(대상자 추천및 선발) ① ..... ..... ..... .... 구정조정위원회 .....</p>

## 大田直轄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3. 11. .  
文教社會 委員會

####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3. 10. 15. 大田直轄市長

나. 回附日字 : 1993. 10. 21.

다. 上程日字 : 第 27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 1次 文教社會委員會 (93. 11. 3)

上程, 審查, 議決.

####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家庭福祉局長)

##### 1. 提案理由

基金의 造成 및 運營,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大田直轄市 青少年自立支援基金管理委員會에서 審議토록 規定되었으나 各種 委員會 整備計劃에 따라 大田直轄市 市政 調整委員會에서 審議토록하고,

基金의 支給對象範圍를 擴大하여 家庭環境이 어려운 青少年들이 고  
루 惠澤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與件變化에 따른 字句修正等 運營에  
圓滑을 기하기 위함

## 2. 主要骨子

- 가. 基金造成 財源中 青少年對策委員 또는 篤志家 誠金品으로 하였던 것을 篤志家가 出捐하는 現金, 物品 其他 財產으로 하고자 함.(案 第2條)
- 나. 大田直轄市 青少年 自立支援 基金管理 委員會에서 運營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審議토록 규정된 것을 大田直轄市 市政調整委員會에서 審議토록 하고 不必要한 委員會 構成條項을 削除 하고자 함.(案 第3條 및 第4條)
- 다.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委員長이 任命하였던 것을 條例로 指定하고자 함. (案 第7條)
- 라. 自立定着 支援金을 農魚村, 營·魚農 青少年으로 하였던 것을 農村, 營農青少年으로 하고자 함. (案 第8條)
- 마. 兒童福祉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成長 退所 兒童中 自立하기 어려운 青少年도 惠澤을 받도록 基金支援對象을 擴大하고자 함. (案 第8條)
- 바. 區 青少年 育成地方委員會 議決을 거쳐 推薦하였던 것을 區政調整委員會 議決을 거쳐 추천토록 하고자 함. (案 第9條)

### III.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 鎮鎬)

- 本 案件은 不遇青少年들의 自立支援事業을 위하여 運用되고 있는 「大田直轄市 青少年 自立支援事業 運用 管理條例」의 內容中 委員會 整備計劃에 따라 基金管理委員會를 廢止하고 基金의 受惠 폭을 넓히기 위하여 基金의 支給範圍를 擴大코자 하는 것이 그 主要內容이 되겠습니다.
- 本 改正案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첫째, 基金造成의 財源에 관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内容으로써, 當初 本 基金造成의 財源中 篤志家 誠金의 경우 現金 또는 物品 으로만 出捐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期他財產까지도 出捐할 수 있도록 出捐範圍를 擴大하려는 内容이며,

둘째, 基金管理委員會의 廢止에 관한 内容으로써 本 青少年 自立支援基金의 運營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基金管理委員會를 두도록 하였으나

本 委員會를 廢止하고 市政調整委員會로 하여금 同 業務를 擔當토록 하고자 하는 内容임.

이는 지난 91년 地方自治制 實施以後 그 必要性이 減少된 各種 委員會 整備計劃의 一環으로 推進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料됨 .

셋째, 本 基金의 支給對象範圍 擴大에 관한 内容으로써 本 基金의 支給對象은 從前 市內에 居住하는 少年·少女 家長과 無職·

末進學 青少年에 대한 教育費, 職業訓練費, 自立定着金등을 支援  
토록 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兒童福祉施設 收容兒童中 一定年齡에  
到達하여 退所하게 되는 兒童에 대하여도 生活定着金을 支援할  
수 있도록 그 支援範圍를 擴大하려는 内容이 되겠음.

- 以上에서 報告드린 本 「大田直轄市 青少年 自立支援 事業運營  
管理 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政府의 委員會 整備計劃에 따른  
基金管理 委員會의 廢止 및 基金支援對象 擴大등이 그 主要內容  
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料됨.

#### IV. 討 論 要 旨 : 省 略

####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 VI. 審 查 結 果 : 原案대로 可 決

#### VII.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